

# 회 원 관 리 규 정

제정 2013. 1. 23.

개정 2013. 8. 20.

개정 2013. 11. 20.

개정 2014. 10. 21.

개정 2015. 2. 26.

개정 2016. 11. 22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한 회원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회원의 구분 및 정의)** ① 회원이라 함은 정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②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정회원은 개인회원, 단체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,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2. 준회원은 후원회원, 명예회원, 청소년회원으로 구분한다.

③ 개인회원은 다음과 같다.

1. 일반회원 : 정관에 따른 회원자격을 갖추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
2. 구조회원 : 지역구조대에 소속되어 수색구조 및 구난현장 대응능력을 갖추고 활동하는 자
3. 구난회원 : 지부구난대에 소속되어 선박 등으로 구조구난 활동을 하는 자
4. 봉사회원 : 지부봉사대에 소속되어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자
5. 교육지원회원 : 지부교육지원대에 소속되어 교육전문 강사 또는 지도사 자격을 갖추고 재능기부 및 교육전문 봉사자를 양성하는 자

④ 개인회원 중에서 연회비 10년치를 납부한 자에게는 평생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

⑤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·업체(이하“단체”라 한다)가 되며 단체의 대표자 및 지정된 자가 단체를 대표한다. 이 경우 단체회원은 규모,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본회, 지부 소속으로 구분한다.

1. 수색·구조, 구난, 어업, 물류 해양안전, 해양환경, 조선업, 수산업, 해상운송, 해양관련 건설 및 서비스, 해상손해보험, 해상보안단체 등 이와 관련된 단체
2. 위 호와 관련한 장비의 제조, 수입판매, 서비스, 교육훈련, 연구 등의 단체
3. 그 밖에 해양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
4. 협회의 공익목적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

⑥ 특별회원은 협회발전에 기여한 개인·단체회원 중 이사회 승인을 거친 자로 하며, 이사회에서 특별회원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특별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
  2. 해양안전, 수색구조·구난 분야에서 협회발전에 기여한 자
- ⑦ 후원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후원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.
- ⑧ 명예회원은 사회에 덕망이 있는 자로서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와 외국인으로 협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- ⑨ 청소년회원은 만 20세미만의 자로 한다.

**제3조(회원의 가입·유지 및 탈퇴)**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<별지 1>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,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회원이 된다. 이 경우 소정의 심사는 신청자가 정관 제5조에 따른 회원자격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각 지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같음한다. 단, 제4조에 의한 특별회원은 제외한다.

②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에 동의하고 CMS계좌로 연회비 납부를 신청한 자는 구조구난본부의 심사를 거쳐 회원자격을 부여한다.

③ 모든 회원의 자격은 1년으로 하며, 매년 회비를 납부한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으로 연장된다. 다만, 평생회원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영구적으로 보장된다.

④ 회원의 탈퇴는 <별지 2>의 회원탈퇴신청서 또는 본인의 의사확인에 의한다.

**제4조(회원의 권리)** ① 개인회원은 정관 제8조에 정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총회 참관권
2. 협회의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
3.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에 대한 참가권
4. 협회가 주최·주관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참가권 및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과 활동의 주최·주관 또는 후원권
5. 협회에서 보유·관리하거나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권리
6. 단체회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장비를 할인 또는 무상으로 대여·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권리
7. 협회에서 보유하는 각종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. 단, 협회의 위상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.

②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제 ①항 개인회원이 가진 모든 권리
2. 정관의 목적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. 단, 참여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③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제 ②항 단체회원이 가진 모든 권리
2. 정관의 신규사업 및 정책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권리. 단, 신규사업 및 정책사업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**제5조(회원의 의무)** ① 회원은 정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1. 정관·제규정 및 총회,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의무
  2. 회비납부의 의무
  3. 각종 행사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 참여 및 품위 유지 의무
- ② 정관 제9조 3호의 각종 행사 및 봉사활동 참여의무와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
  2. 지부와 지역대의 공식적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
- ③ 제②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한다.
- ④ 회원은 정보의 변동 시 지체없이 관할 지부 또는 본회로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6조(회원관리)** ① 지부별로 회원을 관리하며, 회원관리는 <별지 3>의 지부별 회원관리 대장에 의한다. 회원에 따른 회원번호 부여 기준은 <별표 1>과 같다.

- ② 본회는 지부별 회원관리대장을 취합하여 총괄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지부에서 접수한 회원가입신청서는 지부에서 회원관리프로그램에 등재 한 후, 편철하여 보관한다. 회원가입신청서가 본회로 접수될 경우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관할 지부에 신청서 원본을 배부한다.
- ④ 본회는 회원에게 <별지 4>의 회원증 및 회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⑤ 지부는 관할 회원의 탈퇴 또는 신상정보의 변동상황 등을 수시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관리대장도 수정 관리하여야 한다.
- ⑥ 회원에 관한 정보는 외부유출을 할 수 없으며,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⑦ 각 항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며, 회원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두어 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회원의 자격상실)** ① 정관 제10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원 자격이 즉시 상실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중단되며 직책을 맡은 경우 그 직이 상실된다.
- ③ 재가입은 자격상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.
- ④ 특별한 사유 없이 가입신청서 제출 후 6개월, 회원증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간 연

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탈퇴한 것으로 본다.

⑤ 재가입한 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.

**제8조(회원의 제명)** 회원이 정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관11조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때 에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제명 할 수 있다.

**제9조(회원의 상벌)**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창과 징계를 할 수 있다.

①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정의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1. 활동을 통하여 국가나 사회·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2.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 회원의 모범이 되는 자
3.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자
4. 기타 정부나 유관기관에서 표창을 수상한 자

② 회원이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제명, 자격정지, 주의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
2. 협회의 조직을 와해하려한 자
3. 협회 또는 회원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가하는 불의의 행위를 한 자

**제10조(회비납부)** ① 회원이 납부해야 할 연회비는 <별표 2>와 같다.

② 회비는 매년 1월중 일시납으로 은행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 가입한 회원은 가입신청서 제출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영수증의 발부)** ① 회원이 회비납부 영수증을 청구할 경우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회비영수증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, 별지 제5호 서식의 회비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영수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행하고 <별지 6>의 발행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,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회비관리 책임자)**

① 회비관리 책임자를 본회는 경영지원본부장, 지부는 협회장으로 한다.

② 회비관리 책임자는 회비관리에 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회비수납 보고)** 지부 협회장은 회원현황 및 회비수납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본회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를 취합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정기보고 : 매년 2월까지 회원가입탈퇴현황, 회비수납에 관한 사항을 회원관리 전산

프로그램과 대조 확인 후 보고하여야 한다.

2. 수시보고 : 수시 가입현황, 회원변동사항을 <별지 3>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5조(회비의 환불)** ① 회비환불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.

1. 과오납한 경우
2. 행정착오로 회비를 잘못 수납한 경우

② 회비의 환불은 <별지 7>의 회비환불청구서와 회비납부 영수증 원본을 접수한 후 환불한다. 다만 회원이 회비납부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비납입내역 계좌를 출력하여 첨부하고 해당회원 또는 해당업체 명의로 개설된 은행통장으로 송금하여 환불한다.

③ 제1항에 의한 회비환불은 회비환불청구서에 의하되 신청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반기회비를 환불할 수 있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. 1. 23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전에 시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.

**제3조(시행세칙)**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
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당시 회원관리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제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 회원번호 부여 기준

MARSA - 01 - OR - 13 0001

①
②
③
④
⑤

① 협회 영문명칭(공통)

② 지부 코드번호

코드번호	지 부	코드번호	지 부
1	강원북부지부	11	전북지부
2	강원남부지부	12	충청북부지부
3	경북지부	13	경기·충남북부지부
4	울산지부	14	인천지부
5	부산지부	15	제주지부
6	경남동부지부	16	서귀포지부
7	경남서부지부	17	충청남부지부
8	전남동부지부	18	서울지부
9	전남남부지부	19	부안지부
10	전남서부지부	20	울진지부

③ 회원종류 코드

연번	회원종류	코드	연번	회원종류	코드
1	일반회원	OR	6	후원회원	DO
2	구조회원	RE	7	청소년회원	JN
3	구난회원	SA	8	특별회원	SP
4	단체회원	GR	9	봉사회원	VL
5	명예회원	HO	10	교육지원회원	ED

④ 회원가입 연도 : 2013년도 → 13

⑤ 지부 회원관리대장(단체, 개인)의 당해 연도 회원가입 순번

[별표 2] 회원별 연회비

연 회 비 납 부 금

구 분		직 능	연회비
정 회 원	개인회원	일반회원	30,000원  ※ 구조·구난대원은 회비납부를 면제 할 수 있으나, 구조대 가입비 별도 납부  ※ 평생회원은 300,000원
		구조회원	
		구난회원	
		봉사회원	
		교육지원회원	
단체회원	단체회원	2,000,000원 이상	
특별회원	개인·단체회원 중 이사회 승인	10,000,000원 이상	
준 회 원	명예회원	이사회 승인	임의 사항
	후원회원	뜻을 같이 하는 자	월 3,000원 이상
	청소년회원	만 20세 미만인 자	10,000원

[별지 1]

회원번호		회원구분		가입일	
------	--	------	--	-----	--

※ 굵은선 안은 협회에서 기록하오니 비워두시기 바랍니다.

<b>회원가입신청서</b>					
<b>성명</b>	[한글]		[한문]		<b>사 진</b>
	[영문]				
<b>생년월일 [외국인등록번호]</b>				<b>혈액형</b>	
<b>연락처</b>	<b>전 화</b>	[직장] [자택]		<b>E-mail</b>	
	<b>H.P</b>			<b>FAX</b>	
<b>직장</b>	<b>직장명</b>			<b>근무부서</b>	
	<b>주소</b>				
<b>자택</b>	<b>주소</b>				
<b>주요경력</b>					
<b>보유자격증 [구조관련]</b>	<b>자격증 명칭</b>	<b>자격증 번호</b>		<b>발행기관</b>	
<b>신청회원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회원, 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회원,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난회원, <input type="checkbox"/> 봉사회원,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지원대회원 <input type="checkbox"/> 후원회원, <input type="checkbox"/> 명예회원,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소년회원				
<p>(사)한국해양구조협회 정관 제7조 및 회원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회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<span style="float: right;">[서명 또는 인]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[사)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귀하</b></p>					
<b>구분</b>	일반/지역대회원	평생회원	특별회원	명예/후원회원	청소년회원
<b>연회비</b>	3만원	30만원	1,000만원 이상	3천원 이상	1만원
<b>신청서 제출</b>	FAX	032-832-5122	홈페이지	<a href="http://www.marsa.or.kr">http://www.marsa.or.kr</a> 회원가입	
	우편	부산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(용당동)			
<b>예금주</b>	한국해양구조협회		<b>계좌번호</b>	수협 1010-1020-6195	



회원번호		회원구분		가입일	
------	--	------	--	-----	--

※ 굵은선 안은 협회에서 기록하오니 비워두시기 바랍니다.

## 단체회원가입신청서

단체명 [상호등]			사업자등록번호			
대표자 성명			상근 직원수			
사무실주소						
협회업무 실무자	성 명			전화		
	E-mail			FAX		
활동사항 [사업내용등]						
보 유 장 비 [장비 보유시] * 별첨으로 첨부 가능	장비명	제 원		장비가격		
소속지부						

[사]한국해양구조협회 정관 제7조 및 회원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회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

[서명 또는 인]

**[사]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귀하**

첨부서류 : 사업자등록증 , 단체소개서

구 분	일반 단체 회원		특별 회원	
연회비	2,000,000원 이상		1,000만원 이상	
제 출	FAX	032-832-5122	홈페이지	<a href="http://www.marsa.or.kr">http://www.marsa.or.kr</a> 회원가입
	우편	부산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(용당동)		
예금주	한국해양구조협회	계좌	수협 1010-1020-6195	



**사단 한국해양구조협회**

# 회원 탈퇴신청서 (개인)

※ 회색 부분은 기입하지 않습니다.

		<b>회원번호</b>	
<b>성 명</b>		<b>생년월일</b>	
<b>자택주소</b>		<b>자택전화</b>	[   ] -
		<b>핸드폰</b>	
<b>직장주소</b>		<b>직장전화</b>	[   ] -
		<b>FAX</b>	[   ] -
<b>탈퇴사유</b>	[간략히 기재]		
<b>접수방법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방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 또는 FAX	<b>접수담당자</b>	<b>[인]</b>

[사]한국해양구조협회 회원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위 본인은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을 탈퇴하고자 회원탈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제 출 일 :        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신 청 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인]

**[사]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귀하**



# 회원 탈퇴신청서 (단체)

※ 회색 부분은 기입하지 않습니다.

	<b>회원번호</b>		
<b>단체명</b>			
<b>대표자</b>		<b>생년월일</b>	
<b>업종</b>		<b>등록번호</b>	
<b>소재지</b>			
<b>전화</b>	[    ] -	<b>FAX</b>	[    ] -
<b>접수방법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방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 또는 FAX	<b>접수담당자</b>	<b>[인]</b>

[사]한국해양구조협회 회원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위 본인은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을 탈퇴하고자 회원탈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제출일 : 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대표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[인]

신청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[인]

**[사]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귀하**











## 1. 회원증

앞 면



뒷 면





2. 단체회원증서

제13 - 00호

MARSA-00-GR-13001

# 단체회원증

단체명:

귀 단체는 수상구조법 제 26조에  
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 
단체회원임을 증명합니다.

20    년 0월 0일

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 
총재   신   정   택

# 회비납부 영수증

## 1. 납부자

성명(단체명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회원구분		회원번호	
주 소			

## 2. 납부내용

납부방법	납부일자	적 요	금 액
계좌이체	2000.00.00	연회비	00,000
			0

[사]한국해양구조협회 회원관리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    년   00 월   00 일

사 단 법 인  
총        재

한국해양구조협회  
0 0 0



일련번호 제13-00호

# 기부금 영수증

## 1. 기부자

상 호		사업자등록번호	
성 명		주민등록번호	
주 소			

## 2. 기부금 단체

단 체 명	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	사업자등록번호	131-82-15763
소 재 지	부산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(용당동)		

## 3. 기부내용

유 형	코 드	년 월 일	적 요	금 액
합 계				

소득세법 제34조, 법인세법 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·76조 및 동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위와 같이 기부금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법인에 소득세법 제34조, 법인세법 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호·76조 및 동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 년 월 일

기부금수령인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 
총 재 신 정 택



[별지 6]

## 영수증 발급대장

연번	사용일자	영수증 발급번호	영수자성명	비고
		00지부-1		
		00지부-2		

